

 <b>AJ네트웍스</b>	<b>투자심의위원회 규정</b>	규정구분	전사규정
		개정일	2021.05.11.
		규정번호	01-00-06-00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【목적】

이 규정은 AJ네트웍스(주)의 투자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고 한다.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【적용범위】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,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 【직무와 권한】

1. 위원회는 제11조의 각 부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, 이사회에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투자재무위원회 규정(이하 “본 규정”이라 한다)의 내용을 매년 검토하여,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.
3.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## 제2장 구성

### 제4조 【구성】

1.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.
2. 위원회는 3인의 이사(사내이사 1명, 사외이사2명)로 구성한다.
3.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“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때”까지로 한다.

### 제5조 【위원장】

1.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2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3.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4. 위원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,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5. 제5조 제4항은 위원장의 임기에 준용한다.

## 제3장 회의

### 제6조 【개최】

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제7조 【소집권자】

1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등의 경우에는 제5조 제4항과 같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8조 【소집절차】

1.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3일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2.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### 제9조 【의안제출】

1. 위원회 상정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각 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일 3일 전까지 위원회 지원조직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2. 위원회 지원조직은 전항 접수 의안의 문안 검토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

### 제10조 【결의방법】

1.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2. 위원회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# 제11조 【부의사항】

위원회에서 심의 및 시정 건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자기자본의 100분의 2.5 이상 5 미만인 신규시설투자, 세척에서 정하는 시설외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
2. 자기자본의 100분의 2.5 이상 5 미만인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
3. 자기자본의 100분의 2.5 이상 5 미만인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, 또는 주권 관련

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

4.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 10 미만인의 단기차입금의 증가
5.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 10 미만인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
6. 기타 투자 및 재무 관련 주요 현안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#### **제12조 【관계인의 출석】**

1.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2.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#### **제 13 조 【의사록】**

1.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# **제 14 조 【보고】**

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그 결과를 종합하여, 매 분기 이사회에 보고 한다.

## **제4장 보칙**

#### **제15조 【지원조직의 설치 등】**

1.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.
2. 제 1항에 따라 위원회를 보조하는 투자관련 지원조직은 경영기획실 경영전략팀으로, 재무관련 지원조직은 경영기획실 재무관리팀으로 한다.
3. 지원조직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#### **제16조 【규정의 개정】**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 **부 칙**

#### **제1조 【시행일】**

본 규정은 2021년 05월 1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